

「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」 일부개정 보고

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에 따라 정관 일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림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-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42조(정관의 변경)
 - 정관 개정절차 : 이사회 의결 ⇒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⇒ 시장 승인
 - ※ 2023년 제8회 이사회 심의·의결 완료('23.12.15.)

□ 「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」 구성 : 총 8장 47개 조문 및 부칙

□ 정관 개정사항

- 제11조의 2(비상임이사의 안건제출권 등) 신설
 -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“안건 제출권 및 정보열람권” 내용 반영
 - ※ 『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』에 따른 정관 반영사항 추가

— [신설] 정관 제11조의 2(비상임이사의 안건 제출권 등)

- ①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해당 정보열람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.
- ③ 비상임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한다.

○ 제4조(자본금) 개정

- 「상법」 제287조의 3(정관의 기재사항)에 따른 자본금(20억원) 명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본금) 공단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,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	제4조(자본금) 공단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20 억원 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,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○ 기타 기입 오류사항 정정

대상 조문	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조	이 공단	<u>서울물재생시설공단</u>	목적 대상 명확화
제2조	이 공단	<u>공단</u>	단순 문구 수정
제6조, 제9조, 제12조	지방공기업법	<u>법</u>	목적규정의 축약표현 준수

□ **향후계획(24.3월) : 서울시 승인 요청 및 정관 공포**

〈신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물재생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물재생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명칭) 이 공단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Seoul Water Recycling Corporation(약호 S.W.R.C)라 표기한다.</p>	<p>제2조(명칭) 공단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Seoul Water Recycling Corporation(약호 S.W.R.C)라 표기한다.</p>
<p>제4조(자본금) 공단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,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4조(자본금) 공단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20억원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,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</p>
<p>제6조(임원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2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. ④ (생략)</p>	<p>제6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.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(생략)</p>	<p>제9조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(신 설)</p>	<p>제11조의 2(비상임이사의 안건 제출권 등) ①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해당 정보열람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. ③ 비상임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p>	<p>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p>